
「25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」 신청 안내서

2025. 1.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제조혁신지원처

목 차

I. 신청안내	1
1. 신청대상	1
2. 신청절차	2
3. 유의사항	2
4. 제출서류	3
II. 세부 사업안내	4
1. 사업화	4
2. 실증	6
III. 선정절차	8
IV. 사업비활용	9
1. 사업비 항목	9
2.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	9
3. 사업비 지침	10
[붙임] 지원분야(기후테크)	14

I**신청안내****□ 신청대상**

- 지원대상 : 탄소중립 혁신기술(기후테크 등) 보유 중소기업*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
- 지원제외 사항

구 분	내 용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모든 기업은 1개 부처(중기부, 환경부, 산업부)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중복 신청이 확인된 경우 ■ 중소벤처기업부 '그린벤처 프로그램'과 환경부 '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'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 ■ 중기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트랙 중 사업화, 실증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('사업화' 트랙, '실증' 트랙 중 1개만 신청 가능) ■ 제출 서식을 준수(추가 가능, 삭제 불가)하지 않거나, 접수 기한 내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(전산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) 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타 지원사업 중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기업 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자격*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<p>*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, 거짓인 경우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취소 또는 지원취소 됨</p>
신용 및 기업 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 ■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·폐업 중인 기업 ■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■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<p>*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 등)를 통한 신규 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및 「보조금법」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,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<p>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.go.kr) → 과제관리 → 제재 정보조회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장"

□ 신청절차

- 공고기간 : 2025.1.21.(화) ~ 2025.2.21.(금)
- 접수기간 : 2025.2.10.(월) 09:00 ~ 2025.2.21.(금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ESG통합플랫폼(<https://esg.kosmes.or.kr>) 온라인접수

순서	절차설명
① 사이트 접속	ESG통합플랫폼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여부 확인 및 가입 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미가입 기업은 기업회원 등록(kosmes.or.kr)
② 과제신청 메뉴	탄소중립 사업화지원사업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* 다운로드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
③ 온라인 신청	사업별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일체 온라인 제출 * 순서별 날인 후 스캔본 PDF파일 변환·압축하여 제출, 원조대조필 날인 후 스캔본 업로드
④ ESG자가진단	ESG 자가진단 실시(2월 말까지 완료) * ESG 통합플랫폼에서 ESG자가진단 실시

* 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
(TEL. 055-751-9586 / E-mail. jinsuesong@kosmes.or.kr)

□ 유의사항

- ① 사업 신청 시 ESG통합플랫폼 및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이며, 신청은 온라인(ESG통합플랫폼) 제출만 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없음
- ② 회원가입, 신청서 등 온라인 제출은 최소 접수 마감일 3일 이전 입력 권고하며, 접수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강제 종료
* 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 폭주로 오류·장애 발생이 가능하므로 마감 전일까지 제출을 권고하며, 오류·장애로 인한 접수시간 연장 불가
- ③ 사업별 필수 제출 서류(특허, R&D성공판정, 구매동의서 등)는 법인은 법인 명의, 개인기업은 개인(대표자)명의만 인정
- ④ 계획서 성과목표에 신청 사업비 사용용도에 따라 성과지표 제시
- ⑤ 신청 사업비는 사업안내서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며, 지원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 가능
- ⑥ 협약 체결 시 자기부담금 현금 입금 확인증 및 국고보조금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(요청기한 내 미제출 시 협약 해제)
*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선정기업에서 부담함(보험기간: 협약기간+6개월)

- ⑦ 사업비 계좌 및 카드는 신규 발급·이용하며 불가능한 경우 협약 불가
- ⑧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용역계약 체결 및 물품구매 등과 관련한 민원, 분쟁 등은 지원기업과 분쟁 상대자와의 협의 사안이며, 중소벤처기업부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은 해당 분쟁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
- ⑨ 지원사업 추진시 행정 인·허가 사항(개발제한구역, 그린벨트 등)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(소음발생, 조망권 침해 등) 발생 시,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
- ⑩ 사업계획서는 본문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, 제출 파일의 압축파일명은 [신청사업 트랙]_업체명_과제명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
* 작성예시 : [사업화]중진공_기후테크, [실증]중진공_기후테크

□ **신청서류**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은 압축(20MB)하여 온라인제출

제출서류 목록	제출	비고
① 사업신청서	필수	날인본
② 사업계획서	필수	-
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(3개월이내)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
④ (기업·대표자)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- 국세 : 국세청(www.hometax.go.kr) 발급 - 지방세 : 민원24(www.minwon.go.kr) 발급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
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'24년 12월 31일 기준) - 민원24(www.minwon.go.kr) 발급	필수	-
⑥-1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⑥-2. 기업·개인 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부 ⑥-3. 제3자 기업정보 동의서, 청렴 서약서 각 1부 ⑥-4. 대표자 및 사업책임자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번호 뒤 여섯자리 삭제후 제출)	필수	서명(날인) 필수
⑦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- 국세청(www.hometax.go.kr) 발급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 ('21, '22, '23년)
⑧ 중소기업확인서 1부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
⑨ 신청기업 자가진단 확인서, 사실 확인서 각 1부	필수	날인본
⑩ 신청요건 증빙서류 각 1부 ○ (사업화) 3년 이내 보유기술 - (특허권) 특허권 등록원부 - (국가R&D 완료판정)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확인 및 제출 - (기술이전) 기술이전계약서, 기술이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○ (실증) 6개월 이내 증빙서류 - 계약의향서(LOI), 구매조건업무협약(MOU), 공급계약서 등 * 수요처 직인 날인 必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
⑪ 기타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	해당시	접수마감일기준, 유효(확정) 서류만 인정
⑫ 회사(제품) 관련 소개서	해당시	제품 및 회사소개서
⑬ 수출실적증명(해당시 제출) *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	해당시	2024년도 연간실적 분
⑭ 기후테크분야 인증(해당시 제출) * 환경신기술(NET), 녹색인증, 환경기술성능확인 등 기후테크 및 환경 분야 관련 각종 인증	해당시	유효서류만 인정

II 세부 사업내용

1 사업화

- (사업목적)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
- (신청자격) 탄소중립 관련 기술 소유권 보유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

(기본원칙) 탄소중립 분야 3년 이내 특허권(기술이전, 전용실시권) 보유기업 또는 3년 이내 R&D성공 판정 받은 기업	
요건 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보유한 기업 * 특허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권리 보유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소유 * 실용신안, 디자인권, 상표권, 통상실시권은 신청자격 제외
요건 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부 R&D 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서 정부지원 R&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부지원 R&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

*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,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

- (지원규모)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 이내, 정부지원금 75%미만, 기업부담금 25%이상이며, 기업부담금 전액(100%) 현금부담

구 분	총사업비 (A=B+C)	정부지원금 (B)	기업부담금(C)		
			총 부담금 (C=D+E)	현금 (D)	현물 (E)
구성비율	100%	75% 미만	25%이상	100%	-
예시금액1	200백만원	150백만원	50백만원	50백만원	-
예시금액2	267백만원	200백만원	67백만원	67백만원	-

- (지원내용)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, 제품개선, 국내외 인·검증 등 사업화 지원(총 사업비 내 자율선택)

지원사업	사업비 사용분야		지원한도(기간)	
			사업한도	정부지원금
사업화	① 컨설팅	㉠ 사업화 전략 컨설팅 - 사업화(수출) 전략, 판로 개척, 마케팅 등 ㉡ 공정기술컨설팅 - 생산공정 개선, 디지털화, 기술유출 방지 등 ㉢ 경영컨설팅(사업전환, 자금유치 등) - 인사, 조직, 자원관리(ERP), IPO, IR 등	최대 1억 원	최대 2억원 (8개월 이내)
	② 기술융합	■ 기술 이전비용(융합기술) - 융합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비용 등	최대 1억 원	
	③ 제품개선	■ 디자인 개선, 금형, 설계 등 제품개선	최대 2억 원	
	④ 인·검증	■ 인증 취득비용 - 신기술인증, 환경인증, 해외인증 등	최대 1억 원	
	⑤ 시장진출	㉠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- 홍보물 제작, 전시회 참가, 광고, 브랜드 등 ㉡ 해외기반 구축비용 - 해외진출(통역, 법무, 세무, 회계 등), 물류비용	최대 1억 원	

* 컨설팅은 한도내 다른 분야 최대 2개까지 신청가능하고, 시장진출은 다른분야 1개까지 가능함

■ 사업비 사용분야 신청방법(총사업비 200백만원 기준)

- 사업비 사용시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가계산의뢰 및 비교 견적서를 증빙

지원 가능	(예시1) 각 사용분야 한도내 희망하는 분야 자율선택 신청가능 ①컨설팅(가) ②기술융합 ③제품개선 ④인검증 ⑤시장진출(가) = 200 40 40 40 40 40
	(예시2) 컨설팅은 한도내 2개분야 신청가능, 시장진출은 다른 분야 1개 신청가능 ①컨설팅(가) ①컨설팅(나) ③제품개선 ⑤시장진출(나) = 200 40 40 70 50
지원 불가	(예시1) 사업분야별 사업비 한도 초과 인 경우 지원불가 ①컨설팅(가) ①컨설팅(나) ②기술융합 ③제품개선 ⑤시장진출(가) = 200 50 60 20 50 20
	(예시2) 컨설팅(3개분야)과 시장진출(2개분야)을 한도내 신청하여도 지원불가 ①컨설팅(가) ①컨설팅(나) ①컨설팅(다) ⑤시장진출(가) ⑤시장진출(나) = 200 30 30 40 50 50
	(예시3) 한도내 같은분야 신청시 지원불가 ①컨설팅(가) ①컨설팅(가) ③제품개선 ⑤시장진출(나) ⑤시장진출(나) = 200 30 30 40 50 50

2 실증

- (사업목적)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 실증지원을 통해 신기술 보급·확산
- (신청자격) 보유기술이 시제품제작 단계 이상(TRL 6단계 이상)으로 국내외 수요기업·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기술검증이 필요한 기업

■ (필수조건) 수요기업의 관련기술 구매의향서(LOI), 구매조건업무협약(MOU), 구매계약서 등 6개월이내 증빙자료 보유기업

*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사업 참여 시 우대지원

(수요기업이 기업부담금 25%의 40%이내 현금 또는 현물 참여)

구매동의서 (구매의향서, MOU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제명, 지원기업명, 동의서작성일자, 수요처의 장 날인 등
구매계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발품목명, 개발품목의 사양,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,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지원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• 과제명, 개발기간, 수요처 담당자, 구매예정 품목·규격·수량·금액·사양 등이 포함된 지원기업과 수요처간 계약서 등 (직인 포함, 서명 불가)

※ 참고사항 (수요기업 정의)

- 대·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
- 중소기업 :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,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

구분	내용	비고
업종	제한없음	중소기업확인서(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) 등 *발급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smba.go.kr)
업력	창업 5년 초과	접수마감일 기준
매출액	300억원 이상	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

- 기타부문 :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, 단체, 병원 등

- (지원규모)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이내, 정부지원금 75%미만, 기업 부담금 25%이상이며, 기업부담금의 50%를 현금, 현물 각각 부담
* 기업부담금의 현물은 인건비만 인정

구 분	총사업비 (A=B+C)	정부지원금 (B)	기업부담금(C)				
			총 부담금 (C=D+E)		기업 부담률	현금 (D)	현물 (E)
구성비율(단독)	100%	75% 미만	25% 이상		25%	50%	50%
구성비율(컨소시엄)	100%	75% 미만	25% 이상		15% (중소기업)	50%	50%
			중소기업 15%	수요처 10%	10% (수요처)	현물 OR 현금	
예시금액1(단독)	800백만원	600백만원	200백만원		25% (200백만원)	100백만원	100백만원
예시금액2(컨소시엄)	800백만원	600백만원	200백만원		15% (120만원)	60백만원	60백만원
			기업 120	수요처 80	10% (80백만원)	현금 OR 현금	

- (지원내용)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제품설치, 제품개선,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

지원사업	사업비 사용용도		정부지원금 한도(기간)
실증	① 인건비	■ 내부인건비(현물, 신규채용)	최대 6억원 (1단계 8개월 이내) * 2단계(2년과제)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지원 여부 결정
	② 사업비	■ 재료비 ■ 외주용역비 ■ 지급수수료	
	③ 여비	■ 국내여비 ■ 국내여비	
	④ 유형자산	■ 자산취득비	
	⑤ 무형자산	■ 무형자산 취득비	

Ⅲ 선정절차

□ 평가방법

- ① **(서류심사)** 신청 자격요건, 제한 대상 여부, 사업계획 타당성, 기술성, 사업성, 필요성 등 서류평가
 - 평가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하여 65점 이상 절대평가로 지원대상 선정
- ② **(현장평가)** 보유기술 수준, 보유시설, 운영조직 등 현장점검 및 평가
 - * '실증' 트랙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, 필요시 '사업화' 트랙도 현장평가 실시
- ③ **(최종선정)** 발표평가를 통해 정책지원 시급성, 효과성, 파급성 등 최종 지원기업 선정
 - 평가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
 - *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선정하며, 미선정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예비 지원기업으로 선정하여 추가지원 예정

[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]

구분	평가항목	배점	평가내용
기술성(20)	기술 수준(10) 권리성(10)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핵심기술 원천성, 보유기술 우수성 등 ■ 모방난이도, 기술보호역량 등
사업성(20)	시장현황(10), 시장경쟁력(10)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기술의 성장성, 경쟁력 등 ■ 시장점유율, 경쟁강도, 규제현황 등
사업화 계획의 적절성(30)	사업화 및 성과목표의 타당성(10)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(10) 체계성 및 적절성(10)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목표 타당성 및 구체성 등 ■ 사업모델 및 경쟁사 분석 등 ■ 수요처 보유여부 및 판로개척 계획 등
사업화 역량(20)	생산, 마케팅, 자금조달 능력(10) 전문성 및 수행역량(10)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생산인프라, 마케팅 조직여부 등 ■ 참여인력의 전문성, 기술진척도 등
정책부합성(10)	환경·사회적 효과(10) 정책목표 정합성(10)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의 탄소중립 기여도 및 효과성 등 ■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정책기여도 등
가산점(5점)	우대요건 충족여부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건 당1점, 최대 5점/증빙유무
합계		105	

* 발표자료 접수 및 평가 일정 추후 통지

- ④ **(선정결과)** 지원대상 기업에게 개별통보

IV

사업비 활용

□ 사업비 항목

[지원사업별 사용가능 사업비 항목]

사업비 항목		사업화	실증
인건비	■ 내부인건비	-	○
사업비	■ 재료비	-	○
	■ 외주용역비	○	○
	■ 지급수수료	-	○
여비	■ 국내여비	-	○
	■ 국내여비	-	○
유형자산	■ 자산취득비	-	○
무형자산	■ 무형자산 취득비	-	○

□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

구 분	유의사항(부당집행기준)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. 다만, 수행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까지 집행완료된 금액은 제외(다만, 시제품·설비 제작비는 제외함) -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전담기관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-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- 사업비카드(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)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-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 (보조세목별 예산 초과 등)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- 대표 또는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(다만, 인건비는 제외)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한 금액 - 사업 수행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-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-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·대여금·인력·부동산·유가증권·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-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·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- 견적서 내 모델명 및 소요내역 또는 공급 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* 재료, 수량, 단가, 종류별, 수량 및 품질, 소요시간 등 계산하는 것 -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되지 않거나, 수행 결과물이 없는 경우 - 간이영수증으로 집행한 경우 - 해외 증빙서류 첨부 시 사용명세서에 환율 환산 또는 영수증에 환산표기가 없는 경우 - 자사계좌 이체의 경우 단, 가상계좌만 허용하는 거래 또는 국외출장, 해외구매 시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환율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제출한 경우사용가능(사전 전담기관 승인) - 기타 타 부처 및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집행한 경우 - 사업비 집행 정지 통보 또는 사업수행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 -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 사업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사업비 집행지침

구분 비목	사업비 집행지침	
내부 인건비	산정 기준	<p>○ (내부인건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내부직원(해당기업의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)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지원사업의 참여율에 따라 지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사업비의 20% 이내로 인건비 산정 * 참여율은 사업책임자의 경우 30% 이상 *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부담금 포함(지원기업 부담금 미포함) * 소속기업의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사업수행자로 참여불가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<산정기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건비 = 급여총액/12 x 참여율 x 참여기간(월) *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「월 평균급여액x참여기간x참여율」로 산정하여 적용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정부 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참여인력의 모든 사업참여율은 합하여 100%를 초과할수 없다. * 참여 인력의 참여율 확인을 위해 인력 투입 관련 증빙제출 필요 - 지원기업 신규 채용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의 100%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*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수행 참여자(신규 채용 사업수행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사업 수행자도 인정, 34세 초과하는 수행자는 최대 90%까지 계상)의 인건비 중 자기 부담금 현금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
	증빙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업수행 참여자 현황표(수행자명, 직위, 참여기관, 참여율, 변경사항 등) ② 참여인력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) ③ 급여명세서(월별) ④ 계좌이체증명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규채용 인건비에 한함)
	부당 집행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급된 인건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경우 - 사업수행자를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(신규채용 후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포함) - 사업수행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- 개인별 연봉의 10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- 사업화계획서상의 인건비를 사전승인 없이 10%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- 자기부담금 현금계상이 가능한 신규 채용자가 아닌 다른 사업수행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

구분 비목	사업비 집행지침	
재료비	○ (사업 재료비) -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	
	산정 기준	○실소요 경비 계상 - 귀금속, 보석,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 단. 사업연관성 및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로 구매가능
	증빙 서류	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외주용역사의 해당금액 입금증, 계좌이체증명) ③ 견적서(3천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련 서류 및 계약서 첨부) * 세부산출내역(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 등 기술)이 기술된 견적서 ④ 계약서(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) ⑤ 거래명세서
부당 집행 기준	- 사업과 관련없는 재료비를 집행한 경우 - 객관적인 구매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집행일 경우 - 수행기관 상호 간 및 내부기관 거래 금액(관계회사 거래 포함) * 단독 판매처,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,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-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사업비 집행금액에서 미제외 - 기타 지원사업과 연관성 없는 재료를 구매 및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등 - 사업화계획서상의 재료비를 사전승인 없이 20%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	
외주 용역비	○ (용역비) -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또는 기업에게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* 컨설팅비, 시제품제작비, 실증시설 및 장비 설치비, 인검증 및 시험분석비 등	
	산정 기준	○실소요 경비 계상
	증빙 서류	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외주용역사의 해당금액 입금증, 계좌이체증명) ③ 견적서(3천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련 서류 및 계약서 첨부) * 세부산출내역(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 등 기술)이 기술된 견적서 ④ 계약서(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) ⑤ 사업 결과보고서(증빙사진, 검수조서 등 내용 포함) ⑥ 위탁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 증빙 및 정산완료 내역
부당 집행 기준	- 사업계획서상의 외주용역비를 사전승인 없이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*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사업비 계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- 협약종료일 이내에 용역이 완료되어야하며,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위약금 및 지체상금 등 사업비로 집행 불가 - 외주용역비의 계약서, 수행내용, 결과물 및 결과 보고서 등이 없는 경우 -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·업종의 연관성 부재시 집행불가 - 최초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해야하며, 일부과업을 재하청시 사업비 집행 불가	

구분 비목	사업비 집행지침	
지급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용역비, 서비스 등) -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진행한 용역, 서비스 등을 받고 지급하는 비용 * 전시회 참가비, 운송비, 공공요금 및 제세, 통번역비, 임차비(기자재, 보관장소 등 소요비용) 등 	
	산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실소요 경비 계상
	증빙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③ 견적서(3천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련 서류 및 계약서 첨부) * 세부산출내역(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 등 기술)이 기술된 견적서 ④ 계약서(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) ⑤ 거래명세서 ⑥ 사업 결과보고서(참가비 영수증, 증빙사진 등)
	부당 집행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와 직접 관련이없는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, 청소비 등은 사용불가 - 임차비는 계약기간이 협약종료일까지이어야 하며, 원상복구비용 및 수선비 등으로 사용불가
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국내·외 여비) -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소재지를 벗어나 타지역 또는 타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	
	산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실소요 경비 계상 - 지원기관의 자체 기준 단가를 적용 단,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 여비규정 범위내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- 해외 전시회, 해외학회 등 기술동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경비는, 항공료, 체재비, 여권/비자 발급수수료, 여행자 보험 등을 계상(단,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없음) - 지원사업 수행과 관계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
	증빙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내부결재문서 - 개최 계획 및 결과(출장자, 기간, 장소, 목적, 여비 산출내역, 세부일정 포함)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④ 국외출장인 경우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(출입국 사실증명서 등) *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을 경우(전담기관 여비규정 범위내 지급) -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- 출장관련 서류(교통, 숙박, 식비 등)
	부당 집행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국내·외여비 -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전담기관 여비규정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-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-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(또는 환전계산서)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- 출장결과 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- 숙박비, 식비 등을 해외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-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성 경비 - 사업화계획서 상 사업수행자 외 인원에 대한 출장비용

구분 비목	사업비 집행지침	
유형자산 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기계장치구입비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증을 위해 기술개발, 성능개선, 시험·검사 등에 필요한 기구, 장비, 설비, S/W 등을 구입 및 구축 	
	산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소요 경비 계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입예정인 기계장치구입비의 원가계산 및 비교견적이 필요 - 구입 장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및 연구장비 심의 결과 필요
	증빙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외주용역사의 해당금액 입금증, 계좌이체증명) ③ 계약서, 견적서(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련 서류 및 계약서 첨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세부산출내역(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 등 기술)이 기술된 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및 연구장비 심의 결과 '승인' 공문(1억원이상 장비 구입시) ⑥ 사업 결과보고서(증빙사진, 검수조서 등 내용 포함)
	부당 집행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형자산취득비는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,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 한 경우 지원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업계획상 설비구축이 주된 목적인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례 변경 할 수 있음 - 범용성 장비(PC,프린터 등)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(MS-office, 한글 등)은 산정불가 -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산정불가 - 협약기간 중 구매한 기계장치를 협약기간중 또는 협약기간 종료(5년간) 이후에 임의처분 하는 경우 - 장비구입은 협약종료 2개월 이전까지 납품·설치 되지 않는 경우 단, 재난, 재해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업기간 1개월전 까지 가능
무형자산 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특허 등 IP 취득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S/W등록 등)의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에 필요한 비용 	
	산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소요 경비 계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P 취득비 대행 수수료 집행은 가능하나,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 - 협약일 이후에 진행건에 대해 지원가능하며 소유 및 출원인을 지원기업 명의로 진행
	증빙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) ③ 견적서(3천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련 서류 및 계약서 첨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세부산출내역(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 등 기술)이 기술된 견적서 ④ 계약서(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) ⑤ 출원·등록시 특허서지사항과 번호가 기재된 완료문서 제출
	부당 집행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사업과 무관한 내용의 특허 등 무형자산비용은 불인정하며 선결제 불가 -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의 집행은 가능하나, 성공보수의 집행은 불가 - 협약일 이전 출원이 완료된 건에 소요되는 비용(선행특허조사비, 우선심사출원, 등록비용 등)은 집행이 불가, 협약일 이후 과제와 관련된 출원건에 대한 비용은 집행가능

구 분	개 념	세 부 분 류	
클린테크 (Clean Tech)	재생·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	재생에너지	재생에너지 생산, 에너지 저장 장치, 건물전기화
		에너지신산업	가상발전소, 송배전, 분산형 에너지공장, 에너지 디지털화
		탈탄소에너지	원전, SMR, 수소, 핵융합 등 대체 에너지원 발굴
카본테크 (Carbon Tech)	공기 중 탄소포집· 저장 및 탄소 감축 기술 개발	탄소포집	직접포집(DAC), CCUS, 생물학적 탄소제거
		공정혁신	제조업 공정 개선, 탄소저감 연·원료 대체
		모빌리티	전기차, 차량용 배터리, 물류, 퍼스널 모빌리티
에코테크 (Eco Tech)	자원순환,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	자원순환	자원 재활용, 폐자원 원료화, 에너지 회수
		폐기물절감	폐기물 배출량 감축, 폐기물 관리시스템
		업사이클링	친환경 생활소비제품
푸드테크 (Food Tech)	식품 생산·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감축	대체식품	대체육, 세포배양육, 대체유, 대체아이스크림
		스마트식품	음식물쓰레기 저감, 친환경 포장, 식품 부산물 활용
		애그테크	친환경농업, 대체비료, 스마트팜
지오테크 (Geo Tech)	탄소관측·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	우주·기상	위성 탄소관측, 모니터링, 기후감시·예측, 기상정보
		기후적응	물산업, 재난 방지 시설·시스템
		AI·데이터·금융	기후·탄소 데이터 컨설팅, 녹색금융, 블록체인, NFT